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8회 임시회

심사보고서



2021. 3.

운영위원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3. 11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김화덕 의원 등 12명
- 발의일자: 2021. 2. 22.
- 회부일자: 2021. 2. 25.
- 상정 및 의결: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(2021. 3. 11.)

2. 제정이유

현행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.

3. 제정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심의위원회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(안 제8조)
- 바. 연구단체의 지원(안 제9조)
- 사. 연구활동비 집행 등(안 제10조)
- 아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1조)
- 자. 연구단체의 등록취소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38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, 제38조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」 제8조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다. 입법예고(2021. 2. 22. ~ 2021. 3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이영규)

-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2조에서는 “연구용역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,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은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연구용역비 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,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비 지원규정을 신설, 안 제11조에서는 연구활동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검토결과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기준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